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자체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12.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 - 35939호(2025.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동 829-2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43층 1개동 총 193세대
 [특별공급 112세대(기관추천 19세대, 다자녀가구 28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차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 000606	01	084.2012A	84A	84.2012	30.2466	114.4478	55.6116	170.0594	14.7484	115	11	18	26	3	10	68	47	3
	02	084.2325B	84B	84.2325	31.8200	116.0525	55.6323	171.6848	14.7538	76	8	10	17	2	7	44	32	2
	03	168.3158	168	168.3158	62.8338	231.1496	111.1661	342.3157	29.4815	2	-	-	-	-	-	2	-	-
				합계						193	19	28	43	5	17	112	81	5

■ 공급금액표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호별	층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6.04.24	26.07.24	26.10.23	27.02.25	27.06.25	27.10.25		
084.2012A	84A	201동 1호	4층	1	330,529,350	547,370,650	-	877,900,000	5,000,000	38,895,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307,265,000
			5층	1	334,030,800	553,169,200	-	887,200,000	5,000,000	39,36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88,720,000	310,520,000
			6층	1	337,494,600	558,905,400	-	896,400,000	5,000,000	39,82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89,640,000	313,740,000
			7~10층	4	344,459,850	570,440,150	-	914,900,000	5,000,000	40,745,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91,490,000	320,215,000
			11~20층	9	346,907,100	574,492,900	-	921,400,000	5,000,000	41,07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92,140,000	322,490,000
			21~30층	10	347,245,950	575,054,050	-	922,300,000	5,000,000	41,115,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92,230,000	322,805,000
		31층 이상	13	347,961,300	576,238,700	-	924,200,000	5,000,000	41,21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323,470,000	
		201동 3호, 4호	4층	2	331,244,700	548,555,300	-	879,800,000	5,000,000	38,99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307,930,000
			5층	2	334,708,500	554,291,500	-	889,000,000	5,000,000	39,45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88,900,000	311,150,000
			6층	2	338,209,950	560,090,050	-	898,300,000	5,000,000	39,915,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89,830,000	314,405,000
			7~10층	8	345,175,200	571,624,800	-	916,800,000	5,000,000	40,84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320,880,000
			11~20층	18	347,622,450	575,677,550	-	923,300,000	5,000,000	41,165,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92,330,000	323,155,000
21~30층	20		347,961,300	576,238,700	-	924,200,000	5,000,000	41,21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92,420,000	323,470,000		
084.2325B	84B	201동 2호, 5호	4층	2	333,917,850	552,982,150	-	886,900,000	5,000,000	39,345,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88,690,000	310,415,000	
			5층	2	337,456,950	558,843,050	-	896,300,000	5,000,000	39,815,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89,630,000	313,705,000	
			6층	2	340,996,050	564,703,950	-	905,700,000	5,000,000	40,285,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90,570,000	316,995,000	
			7~10층	8	348,074,250	576,425,750	-	924,500,000	5,000,000	41,225,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92,450,000	323,575,000	
			11~20층	18	350,559,150	580,540,850	-	931,100,000	5,000,000	41,555,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93,110,000	325,885,000	
			21~30층	20	350,898,000	581,102,000	-	932,000,000	5,000,000	41,6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93,200,000	326,200,000	
31층 이상	24	351,613,350	582,286,650	-	933,900,000	5,000,000	41,695,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93,390,000	326,865,000				
168.3158	168	201동 2호, 3호	43층	2	852,101,640	1,411,134,873	141,113,487	2,404,350,000	5,000,000	115,217,5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240,435,000	841,522,5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분양대금 납부방법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201-910031-41204	교보자신선택(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201동201호 홍길동 → 2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 계약금 납부 계좌 및 공급계약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하나은행 201-910031-41204 예금주 : 교보자신선택(주))로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일자에 해당계좌로 납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3홍길동'으로 기재)

3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29(월)	25.12.30(화)	25.12.31(수)	26.01.07(수)	26.01.10(토)~ 26.01.16(금)	26.01.19(월)~ 26.01.21(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힐스테이트 선암호수공원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25-13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단, 은행 영업절법 업무 시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당일 17:30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의사항 및 신청자격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양정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임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신청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청약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계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주택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주택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동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별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별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